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26 |
|----------|-------|

제출년월일 : 2012. 5.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2조)

- 소매인지정신청 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뢰

나. 정의 및 업무의 의뢰(안 제3조 ~ 제4조)

다. 협약체결 등(안 제5조)

- 기관·단체 등과 협약체결 시 필요한 사항 규정

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안 제6조)

- 개인정보 유출금지, 부당징수행위금지 등 기관·단체의 의무사항 규정

마. 지도·감독(안 제7조)

- 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바. 협약의 취소(안 제8조)

- 위무 위반시 협약 취소 등을 규정

사. 시행규칙(안 제9조)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2. 3. 29. ~ 4. 18(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이상 없음(원안동의)

3)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이상 없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